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성평등가족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법」이 개정(법률 제21535호, 2026. 4. 7. 공포, 2026. 7. 8.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현장조사 거부·방해’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나머지 항목의 구조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과태료 적용 범위(안 제9조)

과태료 적용 범위에서 현장조사 거부·방해 관련 내용을 삭제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중 “현장조사 거부·방해” 관련 내용 삭제(안 별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위반행위란 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란 나목을 가목으로, 다목을 나목으로, 라목을 다목으로, 마목을 라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조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조 관련)				
1. (생략)					3. (생략)				
2. 개별기준					4.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1차	2차	3차 이상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	15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1호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1호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1호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1호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1호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1호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마. 법 제17조에 따른 유사 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2호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라. 법 제17조에 따른 유사 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2호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연 락 처	(02) 2100 - 6422